



제429회국회(정기회)
제8차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용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3560호)

2025.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노무제공자 등의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을 위한 특례 등	3

I. 개요

1. 이용우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3560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용우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10. 13.
- (3) 회 부 일 : 2025. 10. 1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무제공자, 예술인, 현장실습생, 학생연구원 등은 전통적 고용관계 외부에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함. 업무 과정에서 각종 재해와 질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현행 건강보험 제도는 이들을 지역가입자로 분류하고 있음.

이로 인해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소득 산정 방식의 불완전성과 예측 불가능성으로 인해 부담 수준이 과도하게 높거나 불합리하게 부과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 보험료 체납 및 건강보험 미가입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해당 계층에 대해 특례 적용을 통해 직장근로자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고 있음. 건강보험 또한 동일한 노동환경과 위험에 노출된 이들에 대해 유사한 보호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노무제공자, 예술인, 현장실습생, 학생연구원 등을 직장가입자로
두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여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조
의2 및 제7조의2 신설).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노무제공자 등의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을 위한 특례 등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¹⁾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직접 부담하여야 하는 노무제공자, 현장실습생, 학생연구자, 예술인을 ‘근로자’로 간주하고, 이들과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를 ‘사용자’로 간주함으로써 직장가입자에 포함되도록 하여, 노무제공자 등의 계약상대방인 사업주가 건강보험료를 분담하게 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플랫폼을 통한 노무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 ‘노무제공 플랫폼사업자’가 자격 취득·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그에 대하여 보험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2(노무제공자 등에 대한 특례)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는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각각 근로자 및 사용자로 본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공무원 및 교직원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의2(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생략)
<신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에 따른 노무제공자로서 같은 법 제91조의16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자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에 따른 현장실습생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에 따른 학생연구자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
- 제3조의3(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현행 제3조의2와 같음)
- 제7조의2(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①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와 노무제공플랫폼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에 관한 사항
 2.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성명·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사업에 노무제공플랫폼을 이용하기 시작한 날 및 종료한 날
 4.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의 성명·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노무제공자에 관한 보험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u>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u> 1. <u>노무제공플랫폼 이용계약의 개시일 및 종료일</u> 2. <u>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의 보험관계 확인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u> 3. <u>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확인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u> ③ <u>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u> ④ <u>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노무제공자 또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u> ⑤ <u>제4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노무제공자 또는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 ⑥ <u>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해당 보험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⑦ <u>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와 관련된 정보를 해당 노무제공자와 사업주 사이에 체결된 노무제공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u>
--	---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나. 검토의견

□ 현행법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되며,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됨. 이 중 고용기간 1개월 미만의 일용직 근로자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되며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는 지역가입자가 됨²⁾.

- 현행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직장가입자는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건강보험료[기준소득월액의 7.09%(2025년 기준)]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준소득월액의 3.545%씩을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전액을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³⁾

2)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 가.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
 - 나.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2.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 부후보생
 3.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 ③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법 제6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2.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3.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4. 근로자가 없거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3)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보험료율 등)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제1항에 따라 정해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와 같이 현행법에서는 직장가입자의 요건으로 “근로자”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장이 특정되지 아니하고 노무제공계약이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며 계약상대방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는 ‘노무제공자’나 ‘예술인’, 그리고 사업장에서 현장 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 훈련생(‘현장실습생’)과 대학·연구기관등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학생연구자’)는 직장가입자에 포함되지 않고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최근 플랫폼 산업의 활성화 등으로 고용형태가 다변화되면서 노동관계법령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노무제공자(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기사 등), 예술인 등에 대한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해소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됨에 따라 2020~2022년에 걸쳐 「고용보험법」⁴⁾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⁵⁾이 각각 개정되어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은 각각 1만분의 709로 한다.

4)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① 근로자가 아니면서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하 “예술인”이라 한다)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이 장을 적용한다.

제77조의6(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①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이 장을 적용한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장의4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

제91조의15(노무제공자 등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직접 노무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나.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일하는 사람의 노무제공을 중개·알선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이하 “온라인 플랫폼”이라 한다)을 통해 노무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대상에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편입되었음.

< 고용보험 가입 대상 노무제공자의 범위 >

시행일	노무제공자 범위
2021년 7월 1일	○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육교구 방문강사, 집화·배송 업무 담당 택배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전업),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원, 방과후학교강사, 건설기계운전원,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철강재·위험물질 운송 화물차주
2022년 1월 1일	○ 토크서비스업자 및 대리운전업자 추가
2022년 7월 1일	○ 물류센터·소비자 화물 운송 및 자동차·곡물(사료) 운송 화물차주, 소프트웨어사업 노무제공자,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원 및 골프장 캐디 추가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 노무제공자의 범위 >

시행일	산업재해보상보험 피보험자의 범위	비고
2008년 7월 1일	○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 자차기사, 학습지 교사 및 골프장캐디	전속성 요건 충족 필요
2012년 5월 1일	○ (기존 가입 대상) + 택배기사 및 토크서비스기사	
2016년 7월 1일	○ (기존 가입 대상) +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및 대리운전기사	
2020년 7월 1일	○ (기존 가입 대상) +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원 및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운송원)	
2021년 7월 1일	○ (기존 가입 대상) + 소프트웨어 기술자	
2022년 7월 1일	○ (기존 가입 대상) + 유통배송기사, 택배지·간선기사, 화물차주(자동차, 곡물가루·곡물·사료 운송원)	
2023년 7월 1일	○ (기존 가입 대상) + 탁송기사, 대리주차원, 일반 화물차주,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 기사 및 건설현장 화물차주	전속성 요건 폐지
2024년 1월 1일	○ (기존 가입 대상) + 새마을금고·신협 공제모집인 및 방과후학교강사(유치원 방과후강사 및 어린이집 특별활동프로그램강사 포함)	

제91조의16(다른 조문과의 관계) ①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본다.

② 제6조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 또한, 현장실습생의 경우 일반근로자와 동일한 위험권 내에서 현장실습과 작업을 하고 있으나 산재혜택을 받지 못했고, 사업주는 실습에 따르는 산재위험 때문에 실습생 수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음에 따라 현장실습의 내실화 및 산업인력 양성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1997년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특례⁶⁾가 마련되었고,

학생연구원의 경우 정규직 연구원과 거의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수년간 열악한 급여를 감내해야 하며,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된다는 점과 연구기관이 가입하는 민간보험은 보상수준이 산재보험에 비해 낮아 중대한 사고를 당한 학생연구원을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난 2021년 학생연구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특례⁷⁾가 마련되었음.

- 6)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3(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①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훈련생(이하 “現場實習生”이라 한다)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로 본다.
- ②현장실습생이 실습과 관련하여 입은 재해는 제4조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로 보고, 보험급여의 지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제81조 내지 제83조, 제85조 및 제86조에 규정하는 재해보상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 ③현장실습생의 보험료 산정 및 보험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현장실습생이 지급받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으로 하되, 이를 적용하는 것이 현장실습생의 재해보상에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보험료의 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 ④현장실습생의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와 보험급여의 지급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①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 훈련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은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는 그 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로 본다.
- ② 현장실습생이 실습과 관련하여 입은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 ③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현장실습생이 지급받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으로 하되, 이를 적용하는 것이 현장실습생의 재해보상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 ④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료의 산정·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학생연구자에 대한 특례) 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연구기관등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 ②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 중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대학·연구기관등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이하 이 조에서 “학생연구자”라 한다)는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
- ③ 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학생연구자에 대한 보험 관계의 성립·소멸 및 변경, 보험료의 산정·신고·납부, 보험료나 그 밖에 징수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개정안은 현행법상 근로자 및 사용자의 정의⁸⁾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노무제공자, 현장실습생, 학생연구원 및 예술인을 근로자로 보아 직장가입자에 포함시키고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를 사용자로 보아 보험료의 반액을 분담하게 함으로써, 노무제공자 등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생각됨.

□ 아울러, 「고용보험법」⁹⁾은 켄서비스·대리운전 기사 등 이른바

-
- ④ 학생연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 학생연구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사유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학생연구자에게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휴업급여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제54조, 제56조제2항, 제67조 및 제69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학생연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4. 13.]

8)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공무원 및 교직원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 나.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다.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립·운영하는 자

9) 「고용보험법」 제77조의7(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① 제15조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에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수집·관리하여 이를 전자정보 형태로 기록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하 “노무제공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이하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라 한다)와 노무제공플랫폼 이용에 대한 계약(이하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경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제공자에 대한 제15조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무제공자에 관한 보험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게 해당 노무제공플랫폼의 이용 및 보험관계의 확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
2.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의 보험관계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사업장의 명칭·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3.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노무제공자의 이름·직종·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③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제공한 자료 또는 정보를 해당 보험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⑤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신고와 관련된 정보를 해당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사이에 체결된 노무제공계약이 끝난 날부터 3년 동안 노무제공플랫폼에 보관하여야 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불리는 노무제공자의 경우 다수 사업주와 노무제공계약을 맺고, 플랫폼을 이용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경우 대체로 건별 노무제공계약 체결방식으로 운영되고 플랫폼 업체에서 수수료 배분 및 이익정산 업무를 관리한다는 점에서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를 통해 노무제공사업장의 명칭·주소 및 노무제공자의 이름·직종·보수 등을 제공받아 보험관계 및 피보험자격과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신고 의무 및 그에 대한 자료·정보 제출 요청 근거를 마련한바,

개정안은 이를 참고하여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와 함께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보험관계 사항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무제공플랫폼의 이용 및 보험관계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다만, 노무제공자, 현장실습생, 학생연구원 및 예술인의 직장가입자 전환 시 사업주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노·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집단 간 공감대 형성이 필요¹⁰⁾한 점, 현재 연소득 500만원 이하의 노무제공자, 현장실습생, 학생연구원 및 예술인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 해당하나¹¹⁾ 개정

10) 참고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편입시키려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1429호, 진중덕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사의 과도한 비용 부담으로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의 경영환경이 악화될 것이 우려되고 보험설계사에 대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골프장의 부담과 그로 인한 캐디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이 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여 직장가입자로 전환하고자 발의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0606호, 최혜영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및 골프장 관련 협회 외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사용자의 추가 부담, 다른 지역가입자 및 기존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 모집인은 업무수행 자율성이 보장되는 개인사업자로서 근로자로 취급하기에 부적합하고 신용카드사가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카드모집인 일자리 축소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건설 분야는 소득과약 및 보험료 산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건설업의 하도급 구조 특성상 중소기업에 부담이 전가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1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제2조제1항 제2호 관련)

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안에 따라 직장가입자로 편입될 경우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또한,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경우에는 법률 개정 이전까지 노무제공자, 현장실습생, 학생연구원 및 예술인이 가입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어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었으나,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노무제공자와 예술인도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 제도에 이미 편입되어 있는 점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노무제공자 또는 예술인을 직장가입자로 편입하려는 취지에서 전종덕의원(제1429호)과 한창민의원(제11998호)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 산업재해보상보험과 달리 건강보험은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지역가입자로서 보험급여 수급이 가능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과의 비교는 부적절하고,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상 지역가입자인 노무제공자, 현장실습생, 학생연구자, 예술인을 보험료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사유만으로 특례를 신설하여 직장가입자로 전환시키는 것은 사용자에게 보험료 분담 의무가 발생하는 것에

나. 영 제41조제1항제3호의 사업소득(이하 이 표에서 "사업소득"이라 한다)이 없을 것.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 기존에 피부양자였던 노무제공자, 현장실습생 등은 직장가입자 전환 시 보험료 부담이 신규로 발생한다는 점, 건강보험 제도에서 특정 직종만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은 타 직종과의 형평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대한의사협회

- 현재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등도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보험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특수종사자의 소득 파악은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과소신고 또는 미신고 시 이를 확인하기 어렵고, 소득과약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직장가입자로 적용할 경우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행정 절차가 과도하게 복잡해져 행정 부담과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아 인한 징수율 저하 및 재정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는바 특정 직역을 위한 특례규정을 두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또한,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노무제공자와 실제 고용관계가 아닌 중개 역할에 불과하며, 보험사무를 처리할 법적·행정적 기반이나 인력이 갖춰져 있지 않은바, 이들에게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및 사업주 정보 신고,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행정 비용 증가 및 법적 책임 부담을 민간 플랫폼 업체에 전가하는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음.

문 의 처

02)6788-5503